ISSN 2234-4438
중소기업융합학회 논문지 제6권 제2호 pp. 25-30, 2016 DOI : http://dx.doi.org/10.22156/CS4SMB.2016.6.2.025

통계처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상호[1], 신제수[1], 전삼현[2], 정현수[3*]
[1]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2]숭실대학교 법학과, [3]숭실대학교 숭실융합연구원

A Study on Improving the Privacy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statistical processing

Sang-ho Bae[1], Je-su Shin[1], Sam-hyun Chun[2], Hyun-soo Chung[3*]
[1]Department of IT Policy Management, Soongsil University
[2]Department of Law, Soongsil University
[3]Soongsil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Soongsil University

요 약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수집·이용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열람청구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오·남용과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의 공익적 성격과 통계자료 수집 및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정보주체 권리, 통계자료

Abstr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apply to certai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s an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s well as the data subject's right to access to thei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by public authorities pursuant to Statistics Act. Such exclusion may lead to problems such as misuse and mis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by data controllers as well as infringement upon the data subejct's right to control ov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is to find solutions to the above problems,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s of statistics and the facilitation of the collection and the use of statistics. Ultimately, the study is to suggest recommendation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ensure the data subject's rights to request access and rectification as well as safe management of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Key Words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ivacy, Subject's right, Statistics data

Received 2016-05-26 Revised 2016-06-16 Accepted 2016-06-17 Published 2016-06-30
*Corresponding author : Hyun-soo Chung(hsj6553@ssu.ac.kr)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사용자인 개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로부터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 및 제공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무단 수집·이용 등의 침해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방안이 필요하다[1].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에도 대규모의 유출 사고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인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이용하고 제공·보관·파기 등 처리를 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통계처리를 위해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된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하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통계작성기관의 의무이다[2].

2016년 5월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97개 기관은 「통계법」에서 지정 또는 승인된 955종의 통계처리를 위하여 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인구동향조사를 비롯하여 범죄분석 통계, 장애인 현황 등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며 오·남용 및 유출이 될 경우 사생활에 큰 침해를 줄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처리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그 적용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8조 제1항 제1호)[1].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통계처리를 위해 수집하고 있는 국민의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정보주체의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 4. 생략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사항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살펴보고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분석하여 공공기관이 통계처리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통계법상 공공기관의 통계처리 현황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을 위해 「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통계자료[2]를 수집하고 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6년 5월 현재 「통계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397개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정통계와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을 승인한 통계인 인구동향조사 등 'Table 1'과 같이 955종의 통계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다[3].

통계자료 수집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수조사(매년 실시)와 전국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조사(매 5년 실시)하는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수집하는 주요 정보로는 주민등록정보, 외국인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21개 분야의 개인정보 등의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인구동향조사에서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신고서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2.2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및 정보주체 권리 현황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컴퓨터의 정보처리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개인정보를 쉽게 대량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4].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위

2)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통계법 제3조제4호)

Table 1. Status of Statistics[3)]

statistics collection agency		statistics kind			collection method		
division	institutions count	total	designated	general	research statistics	report statistics	processed statistics
Statistics korea	1	57	39	18	40	2	15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tatistics korea others)	42	291	18	273	135	139	17
Local government	260	437	17	420	141	261	35
Financial institutions	8	23	10	13	9	6	8
Public corporations	27	49	0	49	21	26	2
Research institutions	20	37	2	35	31	4	2
Association/Union	22	32	4	28	27	3	2
Other institutions	17	29	2	27	14	10	5
total	397	955	92	863	418	451	86

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처리, 목적 범위 내 적법 처리, 안전한 관리 및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Table 2'와 같이 10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들을 반영하고 있다[5,6].

Table 2. Comparison of the Privacy Principles on OECD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ivacy 8 Principles on OEC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inciples
1.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1. Collect the minimum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purpose 2. Processed in a way to minimize privacy 3. Anonymous Principles
2. Data Quality Principle	4. In the purpose of processing accuracy, completeness, freshness guarantee
3.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5. Clarify the purpose of the processing
4. Use Limitation Principle	6. Purpose range due process, Purposes other than those prohibited utilization
5. 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7. Safe management
6. Openness Principle	8.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Policies
7. 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9. Guarantee the rights of a subject of information such as the right, etc. to request an inspection
8. Accountability Principle	10.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all endeavor to gain the trust and fulfilling responsibilities

3)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승인통계기관구분별 현황을 재정리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헌법적 권리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인정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제공, 파기 등 생명주기 단계별로 정보주체의 통제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7].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선택·결정 권리,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권리, 개인정보 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요구권리,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2.3 통계자료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

「통계법」 제33조에 의하면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처리를 위하여 행정기관 또는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위반을 할 경우에 대한 벌칙도 없어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열람 등의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일부 적용하고 있고, 정보주체인 개인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계작성기관이 이러한 통계자료를 활용함에

서 공익적이지만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준수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3. 개선방안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 산업발전 및 주요 정책개발 등의 기초가 되고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 단체소송'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해킹 등 내외부의 직간접적인 침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8].

본 연구에서는 통계처리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통계작성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준수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준수 개선방안으로 첫째, 통계자료 수집의 원활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개인정보의 처리(제3장)는 현재와 같이 적용을 제외한다.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각종 통계는 국가의 산업발전과 정책 수립에 근간이 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계처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원활한 활용과 수집의 용이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의 처리(제3장)는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계자료의 안전한 관리 및 보호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4장)는 적용하여야 한다. 통계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통계처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침해 예방과 침해 시 조치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선방안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과 손해배상 등의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5장). 개인정보 분재조정위원회(제6장), 개인정보 집단소송(제7장)은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방안에 따른 효과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통계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없이 수집하여 통계작성에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정보주체인 개인이 파악하고 통제할 수가 없으며, 침해 피해에 대한 구제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하나, 개인정보 침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청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의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및 분쟁조정 등 피해 구제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Table 3.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nt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urrent	Improvement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chapter III) •Collection, Use, Provision, Destruction, etc. of Personal Information	not apply	not apply
Safe Admin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hapter IV) •Duty to Take Safety Measures, Establishment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Policies,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 on Leakage, etc.	not apply	apply
Guaranteeing Rights of Subjects of Information (chapter V) •Inspection, Correction or Deletion, Suspension from Managing of Personal Information, Liability to Compensate for Damage, etc.	not apply	apply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hapter VI) Class Ac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chapter VII)	not apply	apply

4. 결론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가치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의 가치 또한 충분히 고려하면서 양 가치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통계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는 것은 국가 산업발전과 더욱 더 좋은 대국민 정책개발이라는 중요한 공익의 실현에 꼭 필요한 일이다[9].

그러나 아무리 공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통계처리를 목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 균형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제3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4장)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제5장~제7장)'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로써 본 연구의 개선방안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계법」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향에 대해 후속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K. I. Kim, G. S Jeon and G. S. Chae, "NFC Payment System Model for Security Privacy and Location Information of User,"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5, No. 2, pp. 21-22, Jun. 2015.

[2] W. H. Park and J. Y. Hwng, "Disclosure Limitation Techniques for Statistical Tables and Microdata," *Journal of The Korean Official Statistics*, Vol. 9, No. 2, pp. 146-147, Sep. 2004.

[3] Statistics Korea, Approved Statistics,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pi/2/8/index.static, 2016. 5.

[4] G. N. Yeom,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Operation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Methods*, Master's Thesis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3.

[5]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atute and Guideline Commentary*,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1.

[6] C. B. Yi,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obmunsa, 2012.

[7] Y. Y. Park, *Constitutional research on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cused on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 private sector-*, Master's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8] Y. S. Jeong, "Tracking Analysis of User Privacy Damage using Smartphon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4, No. 4, pp. 13-14, Dec. 2014.

[9] I. H. Lee, *Analysis theory for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rea Association for Informedia Law Presentation, 2015.

저 자 소 개

배 상 호(Sang-ho Bae) [학생회원]

- 1991년 : 계명대학교 전자계산학 학사
- 2013년 ~ 현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술서기관
- 2014년 ~ 현재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박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신 제 수(Je-Su Shin) [학생회원]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학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 석사과정 수료
- 1990년 ~ 2015년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국립의료원
- 2015년 ~ 현재 : 국립보건연구원 서기관
- 2014년 ~ 현재 : 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박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 EA, 개인정보보호,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화, 병원정보화, 바이오빅데이터

전 삼 현(Sam-hyun Chun) [정회원]

- 1987년 : 숭실대학교 졸업(법학)
- 1989년 : 숭실대학교 석사(상법)
- 1992년 :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졸업(박사)
- 1993년 ~ 현재 :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관심분야> : 회사법, 금융법, 경제법, 정보통신

정 현 수(Hyun-soo Chung) [정회원]

- 1982년 2월 : 숭실대학교 전자계산학과 학사
- 1991년 2월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과 석사
- 1995년 2월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과 박사
- 1982년 2월 ~ 2005년 11월 : ETRI 책임연구원
- 2006년 2월 ~ 2011년 3월 : TANC CTO
- 2009년 2월 ~ 2012년 2월 :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겸임교수
- 2012년 4월 ~ 현재 : 숭실대학교 숭실융합연구원 교수

<관심분야> : 정보보호, ICBM , IT 감리 & 컨설팅